

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의견”을 “의견,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조건 이행 및 「수도법」 등 관계 법률의 저촉 여부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신고하려면”을 “신고하려면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”로 한다.

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그렇지 않다.

별표 3 제4호가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별표 8 비고 제5호 중 “분야별 또는 측정기기별”을 “먹는물 수질검사기관, 수처리제 검사기관 또는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중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검사기관별”로, “아니하여도”를 “않아도”로 한다.

별표 8의2 제1호 중 “허용여서”를 “허용하여서”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직접 시료채취 또는 검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”로 하며, 같은 호 각 목 외

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별표 8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서류에 해당 각 목의”를 “서식 또는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표 제7호 중 “검사수수료는”을 “정수기의 품질검사, 먹는샘물·수처리제·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, 먹는샘물·수처리제·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는 제44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가.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직접 시료채취 및 의뢰하여 검사성적서에 참고자료임을 명시하여 발급·통보하는 경우

나.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1)부터 3)의 시료채취(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제외한다)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

- 1) 도서(島嶼)지역[제주특별자치도 본도(本島) 및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] 내의 먹는물 수질검사
- 2) 민간인통제선 이북(以北) 지역의 먹는물 수질검사
- 3)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·점검, 단속, 인가·허가·심사, 민원처리 등에 관한 먹는물 수질검사

가. 시료채취기록부 : 별지 제41호서식에 작성

별표 9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(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2년) 한 부과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별표 9 제1호사목 중 “마목”을 “바목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8)가) 위반사항란 가) 중 “기술능력·시설”을 “기술능력, 시설”로 하며, 같은 목 8)나) 위반사항란 나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목8)나) 위반사항란 나) 중 “인력”을 “인력이 30일 이상 부족한 경우”로, “부족한”을 “7일 이상 지정기준에 부족하거나 맞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”으로 하며, 같은 목 라)부터 바)까지를 각각 마)부터 사)까지로 하고, 같은 목에 라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) 기술능력이 30일 이상 부족한 경우 또는 시설·장비가 7일 이상

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

라)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	업 무 정 지 3 개 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	--

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료채취기록부				
시료명		시료종류		
채취일시				
채취장소				
용기규격 및 재질				
채취용량				
시료보존제	종류	첨가량	첨가시간	분석대상항목
현장측정값	예)잔류염소			
기타				
특이사항				
시료 운영방법 및 운송시간				
위와 같이 시료 채취 및 현장 측정 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.				
채취자	소속	직급	성명	(서명 또는 인)
실험실 인수자	소속	직급	성명	(서명 또는 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샘물등의 개발허가) ① ~ ③ (생략)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의 <u>의견</u>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<u>샘물·염지하수 개발 허가증</u> 을 발급하여야 한다.	제3조(샘물등의 개발허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의견</u> ,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조건 이행 및 「수도법」 등 관계 법률의 <u>저촉여부</u> ----- --.
제11조(휴업 등의 신고)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<u>신고하려면</u>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허가증·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11조(휴업 등의 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고하려면</u>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<u>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</u> -----.
제36조의3(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) 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36조의3(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

1. · 2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<u>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그렇지 않다</u>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